

함께하는 기술혁신,  
스케일업 코리아

ISBN 979-11-85369-29-7

koita 매뉴얼  
2022-007

# 2022년 연구개발 조세지원 실무 매뉴얼

2022.05



함께하는 기술혁신,  
스케일업 코리아

ISBN 979-11-85369-29-7

koita 매뉴얼  
2022-007

# 2022년 연구개발 조세지원 실무 매뉴얼

2022.05



# Contents



---

## Introduction

### 일러두기

- |                           |   |
|---------------------------|---|
| 1. 연구개발 조세지원 Q&A          | 4 |
| 2. 2022년 연구개발 조세지원 주요개정사항 | 8 |

---

## CHAPTER 1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조세지원 현황

- |                       |    |
|-----------------------|----|
| 1.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 12 |
| 2.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 14 |
| 3.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 현황 | 17 |

---

## CHAPTER 2

###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 |                                     |    |
|-------------------------------------|----|
|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 20 |
|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 38 |
|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42 |
|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46 |
| 5.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8 |
| 6.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br>법인세 등의 감면 | 51 |
| 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55 |
| 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59 |
| 9. 통합투자세액공제                         | 61 |



---

### CHAPTER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관세법 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70
2.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75
3.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76
4.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78

---

### CHAPTER 4

#### 기타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2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89
3. 고용중대기업 세액공제	94

---

### CHAPTER 5

#### 부록

1.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00
2. 연구개발 조세지원 관련 기본용어	104
3.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117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146
5. 연구개발 조세지원 주요서식	147

# 연구개발 조세지원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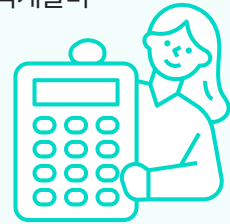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한도가 있나요?**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과제에 선정되어 일정부분 정부출연금 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용에 포함이 되나, 정부출연금으로 지출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10억 규모의 과제에서 민간현금부담금이 1억, 정부출연금이 9억인 경우 민간현금부담비용 1억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0억 규모 정부 출연과제

정부출연금 9억

세액공제 적용 X

기업현금부담금 1억

세액공제 적용 O



3

**Q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세액공제 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제도 등이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만이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o	o
통합투자세액공제	o	o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o	o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제도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o	x

4

**Q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험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p.23 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된 시험기기 구매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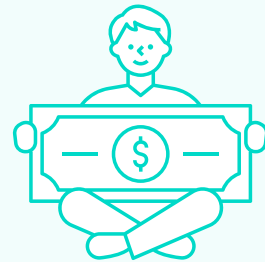
5



**작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상황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니(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당장 감면받을 법인세가 없을지라도, 이후 이월공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의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는 자율양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p.167 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와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는 연구과제 총괄표에 기재하신 연구과제별로 작성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서식 마지막 장에 작성방법이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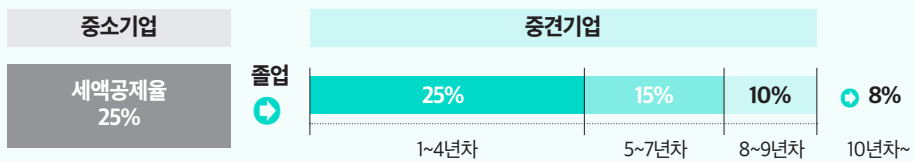


**2021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동일한가요?**

7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25%입니다.  
2021년에 중소기업을 졸업하셨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간은 25%, 이후 1~3년차에는 15%, 이후 4~5년차에는 10%의  
세액공제율입니다. 이후 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8%가 적용됩니다.



**내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토지를 미리 사두었는데,  
지방세 감면을 못받는 건가요?**

8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일 경우 2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후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신청하시고, **1년(신축일 경우 2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면 신청 시기가 지난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72 참고)



토지 및 건축물 취득

60일 이내 취득세 감면 신청

1년(신축인 경우 2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인정

## 2022년 연구개발 조세지원 주요 개정사항

### □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분야 34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공제율 적용

[표1]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분야	구분	기술
반도체 (20개)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등
	시스템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소·부·장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등
배터리 (9개)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등
	차세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등
백신 (5개)	개발·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세포·동물 모델로 한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시험 및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원·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

[표2]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통합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6	8	16	4
신성장·원천기술	20~30	20~4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일 반	0 ~ 2	8	25	일 반		1	3	10	

-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기술범위 확대 및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 탄소중립 분야 신설 및 대상 기술 범위 확대(12개 분야 235개 기술 → 13개 분야 260개 기술)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 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IP)을 추가
  
- 기술이전·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공제율 상향(「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공제율 상향조정(취득세 35%, 재산세 35% → 취득세 50%, 재산세 50%)



# 2022

## 연구개발 조세지원 실무 매뉴얼

# Chapter 1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조세지원 현황

1.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2.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3.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 현황

# 1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조세지원 현황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2017.9.22.)

### 1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 1) 연구 및 개발의 정의

- 연구 :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개발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2)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의 범위

- 다음의 활동은 '연구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봄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 다음의 활동은 '개발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봄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3) 기타 주요용어 정의

-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함

-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

- ▶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하여 시제품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적인 연구결과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분류

- 비화폐성 자산

-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함. 화폐성자산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함

- 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함

## 2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 1)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상각방법
연구단계	연구비(당기비용)	-
개발단계	1.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 개발비(무형자산)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으로 상각 (단, 법령·계약에 내용연수가 정해진 경우 동 기간동안 상각)
	2. 자산인식요건 미충족시 ⇒ 경상개발비(당기비용처리)	-

-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정해진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연구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계상)
- 자산인식요건(①, ②, ③ 모두 충족)
  - ① 개발의 정의요건 : 본 매뉴얼 12페이지 ‘개발’의 정의와 같음
  - ②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 다음의 인식요건 모두 충족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③ 개발비의 인식요건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 제시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음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음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음
      - ▶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함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음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음

●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①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하며,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의 상각비
  - 법적 권리 등록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출
  -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
    - ▶ 건물 등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연구소장 또는 연구지원실 관리직원 인건비 등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②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음
  - 판매비, 관리비, 기타 간접 지출(단, 무형자산의 사용준비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 제외)
  -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단계의 운용손실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2) 법인세법상 개발비처리

자산	개발비는 자산처리(연구비는 당기비용)
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가능 시점부터 20년(상각방법 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이내의 기간 중 신고연수에 따라 월할 상각



## 참고

## 연구개발출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 1) 연구개발출연금 회계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고 규정
  - 상환의무 없는 정부출연금 상당액
    - ①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② 수익관련 정부보조금 :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해야 함. 반면,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나 해당 정부보조금이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는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 상환의무 있는 정부출연금 상당액 : 상환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상환예상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동 금액을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함. 과제실패 등으로 상환의무 소멸 시 채무면제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 2) 연구개발출연금 세무조정 방법

- 정부출연금은 해당 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부통지를 받은 날 익금에 산입함(재법인-75, 2005.8.31.). 이는 출연금의 교부통지일에 동 출연금에 대한 권리가 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이후에 법인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일정금액을 반환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비로소 반환할 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 반환액만큼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임(서면2팀-1497, 2005.9.20.)
- 단,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 제10조의2)

### 3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 현황

제도명	주요내용
<b>조세특례제한법</b>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제10조)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대기업 25%, 중견기업 40%) 또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의 25% (대기업 0~2%, 중견기업 8%)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일몰 없이 영구화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15%, 이후 2년간은 10% 당기분 세액공제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10조)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30~40%(코스닥중견기업 25~40%, 대·중견기업은 20~30%)를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10조)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50%(대·중견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제10조의2)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추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연구개발용 자산을 구입하는 때에 익금산입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하고,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25%를 감면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2)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한도설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제18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단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 감면하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8조의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

제도명	주요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과 추가적으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기본공제율은 일반(중소 10%, 중견 3%, 대 1%), 신성장·원천기술(중소 12%, 중견 5%, 대 3%), 국가전략기술(중소 16%, 중견 8%, 대 6%)이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4%)를 기본공제율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
<b>지방세특례제한법</b>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46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와 재산세 5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50%, 중견·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취득하는 부동산 제외)은 취득세 35%와 재산세 35%를 감면(단, 신성장·원천기술심의회위원회 부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각각 10%씩 추가 감면)
<b>소득세법</b>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시행령 제17조의3)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b>관세법</b>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제90조)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b>기타 조세지원</b>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등”)회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여부, 창업대표자의 청년여부,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여부 등에 따라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영위하는 업종, 수도권 소재여부, 소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까지 1억원 한도 내에서 세액감면(단,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정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수당 400만원~1,2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Chapter 2

##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5.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6.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9. 통합투자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최저한세 미적용(중소기업),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세액공제 비율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액발생기준과 증가발생기준으로 구분(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2가지 방법(①, ②)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

① 총액발생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times \frac{25}{100}$

② 증가발생기준 =  $\left( \text{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text{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right) \times \frac{50}{100}$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15%), 이후 2년간(10%)

\*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제도

-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의 2가지 방법(③, ④)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서비스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textcircled{3} \text{ 총액발생기준} = \text{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times \frac{8}{100}$$

$$\textcircled{4} \text{ 증가발생기준} = \left( \text{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text{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right) \times \frac{40}{100}$$

- 대기업의 경우 다음의 2가지 방법(⑤, ⑥)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

$$\textcircled{5} \text{ 총액발생기준} = \text{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times \text{공제율*** (\%)}$$

$$\textcircled{6} \text{ 증가발생기준} = \left( \text{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text{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right) \times \frac{25}{100}$$

\*\*\* 공제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 50% (단, 공제율의 한도는 2%까지임)

### 3) 증가발생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조특령 제9조 제9항)

$$\frac{\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최대 4년)}} \times \frac{\text{해당과세연도 개월수}}{12}$$

※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음

#### 4)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합산(조특령 제9조 제10항, 조특칙 제7조의2)
  -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출자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조특령 제9조 제10항 단서)
  - 피합병법인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①, ②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 ① 각 사업연도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②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 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이 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기본통칙 10-9-3)

#### 5)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조특령 제9조 제18항, 제19항)

배제사유	배제시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4호, 제7호)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인정취소일

## 6) 적용비용(조특령 [별표 6])

구분	사용기준
1. 연구개발	<p><b>가. 자체연구개발</b></p> <p>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p> <p>▶ 다음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li> <li>-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li> <li>-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li> </ul> <p>▶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조특칙 제7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li> <li>-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li> <li>-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li> </ul> <p>▶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의 연구산업</p> <p>▶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함.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조특칙 제7조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li> <li>㉡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li> <li>㉢ ㉡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함)</li> </ul> <p>*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p> <p>▶ '해외 등 파견기간 중 급여와 이직료(스카웃 비용)'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법인 46012-4638, 1995.12.20.)</p> <p>▶ 내국인이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기본통칙 10-0...2)</p>

구분	사용기준
<p>1. 연구개발</p>	<p>②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이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 포함)에 직접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는 자체기술개발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음(서면2탐-1039, 2007.05.29.)</li> </ul> <p>③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특령 제25조의3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따른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임차비용에 한정하므로 기계장치 등의 운용리스료는 포함되나, 건물임차비와 공구 등 취득비용과 금융리스료는 제외</li> <li>▶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음(기본통칙 9-8-1)</li> <li>▶ 연구시험용 시설 취득 시에는 통합투자(과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이고 임차 시에는 해당 시설 임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임</li> </ul> <p><b>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은 자체 연구개발 지출에 한정(조특법 제10조 제5항)</li> </ul> <p>①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li> <li>㉡ 국공립 연구기관</li> <li>㉢ 정부출연 연구기관</li> <li>㉣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비영리법인을 의미</li> <li>㉤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li> <li>㉥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li> <li>㉦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li> </ul>

구분	사용기준
1. 연구개발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p> <p>㉢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p> <p>㉣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대가는 기술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함(도입대가, 항공료, 체재비, 도입기술 자문료 등)</p> <p>▶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제품 개발 완료 단계에서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 분석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법규-1029, 2014.09.26.)</p> <p>㉤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p> <p><b>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b></p> <p>▶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발명, 고안, 창작)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p> <p><b>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b></p> <p>▶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p> <p>▶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함)</p> <p>▶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령 [별표 4]의 산업</li> <li>- 광업</li> <li>- 건설업</li> <li>- 조특령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li> <li>- 조특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li> <li>-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li> </ul>

구분	사용기준
<p>1. 연구개발</p>	<p>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 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li> <li>-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li> </ul> <p>▶ 기술자문료에는 항공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b>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b></p> <p><b>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b></p> <p><b>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b></p> <p>*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특허청공고 제2021-262호에 총 236개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특허법인, 특허법률 사무소 등) 명시(2021.11.24)</p>
<p>2. 인력개발</p>	<p><b>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li> <li>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li> <li>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li> <li>④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li> <li>⑤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에의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li> <li>▶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하지 않음(기본통칙 10-9...1)</li> <li>▶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 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 (기본통칙 10-9...1)</li> </ul> </li> </ol> <p><b>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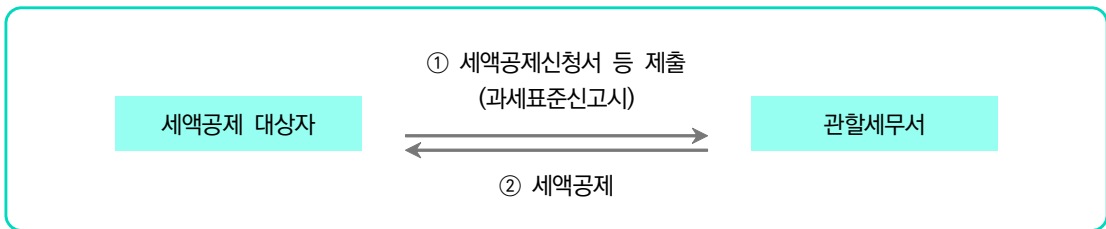
구분	사용기준
2. 인력개발	<p>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p> <p>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p> <p>④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p> <p>▶ 전직원 단합을 위한 워크샵 비용(식대, 숙박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국심98전2166, 1999.05.01.)</p>
	<p><b>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b></p> <p>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p> <p>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p> <p>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p> <p>④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p> <p>▶ 조특령 제26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p> <p>⑤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p> <p>⑥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컨설팅 비용</p> <p><b>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b></p> <p>▶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써 조특칙 제7조 제13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li> <li>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함)</li> <li>-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li> <li>-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li> <li>-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li> </ul> </li> </ol>

구분	사용기준
2. 인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li> <li>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li> <li>4.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li> <li>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li> </ul> <p><b>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 과정을 갖춘 사내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li> <li>②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li> <li>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li> <li>3.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li> <li>4.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li> </ol> </li> </ul> </li> </ul> <p><b>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교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b></p> <p><b>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li> <li>▶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li> <li>▶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li> <li>▶ 위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li> </ul> </li> <li>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li> </ul>

구분	사용기준
2. 인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li> <li>▶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li> <li>▶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li> <li>▶ 위의 요건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li> </ul>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함</li> <li>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li> <li>▶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ul> </li> <li>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li> </ol>

## 7) 신고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 제9조 제14항)
- 해당 과제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조특령 제9조 제13항, 조특칙 제7조 제17항)



※ 신청서 양식은 p.147~p.149, p.158~p.160, p.166~p.170 참조

- 신고 이전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의무사항 아님) 심사 방법, 요청 절차 등은 국세청장이 정함(조특령 제9조 제17항)

## 8) 기타 주의사항

- 기업회계기준(GAAP)에 의거 장부에 계상된 연구비, 경상개발비, 개발비(무형자산)의 단순 합계액이 동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비용의 적용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판단기준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검토
-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개발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2)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조특령 제9조 제1항)
- 세액공제 대상 중 인건비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한정함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 추계과세시 세액공제배제(조특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최저한세 일부배제(조특법 제132조)
  - 중소기업 :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비과세

## 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석사례

###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1-법인-2874, 2021.12.27.)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2021.08.05.)

###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2021.04.2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가목 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인-2587, 2020.07.22.)

###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서면-2020-법인-2499, 2020.07.03.)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인건비 해당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2020.03.31.)

**분할신설법인의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년평균액**

-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로 안분되어야 함(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2020.02.07.)

**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시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 2020.02.03.)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사업의 형태로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일부는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근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는 성공보수 및 일정기간 로열티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간 계약체결 내용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2019.12.27.)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 연구·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9-법인-2293, 2019.09.19.)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퇴직연금 보험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임(감심2018-915, 2019.09.19.)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제품을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견본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쟁점연구용금형의 제작비용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2018구 2633, 2019.06.26.)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2018.11.14.)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2018.06.15.)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7-법인-2477, 2017.12.08.)

**주주인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 여부**

- 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함(서면-2017-법인-2178, 2017.11.29.)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

-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2017.09.25.)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05.29.)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조심2016광1337, 2016.12.16.)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 2016.02.26.)

**중소기업 독립성(관계기업) 기준 불충족시 일반 R&D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2015.10.16.)

**영상디자인 개발업무 관련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비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5-법인-1108, 2015.09.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없이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04.15.)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서면법규과-1059, 2014.10.07.)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위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법규과-1029, 2014.09.2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서면법규과-752, 2014.07.17)

**기술료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법인세과-383, 2013.07.19)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라목의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 발명 보상금을 뜻하는 것으로,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님(대법2013두2655, 2013.06.27)

**참고** 잘못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R&D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지원제도로, 한해 총 감면액이 2.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간혹 조세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거나, 회계 실수 등으로 인해 R&D 세액감면제도를 잘못 활용해, 사후에 감면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세액 외에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는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
- 감사원이 제출한 「기업R&D투자 조세감면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2013),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2018)에는 이처럼 잘못된 세액감면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감사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R&D 조세감면 사후 관리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잘못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이들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R&D 세액공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우리 기업이 세액감면 제도를 잘못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자.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부적정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 중 감면세액 상위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위 30개 법인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 등 3개 법인의 R&D투자 조세감면 신청이 아래와 같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 인건비 및 동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를 포함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 1)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지출한 인건비 중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하 “산기협”이라 한다)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청을 하여 인정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는 위 연구소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로 되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 2)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산기협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와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 △△△(대표이사 △△△)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352억여 원(인건비 111억여 원, 재료비 212억여 원 등)에 대해 80억여 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위 법인은 1993년 12월 경기도 숭실시 소재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나 2011사업연도에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279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00억여 원과 위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82억여 원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과다 신청한 혐의가 서면으로 확인되었다.

- 양산설비를 연구용 재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 2)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등 5개 법인으로부터 양산설비 등을 19억여 원에 구입하고서 위 비용을 연구용 재료비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위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용자산 투자비용인데도 위 세액공제를 과다 신청한 혐의가 서면으로 확인되었다.

- 수탁받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로부터 위탁받은 ‘숯숯’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6억여 원의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인데도 위 세액공제를 과다 신청한 혐의가 서면으로 확인되었다.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지방국세청(☆☆☆국)과 중부지방국세청(★★★국)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 중 2010사업연도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 8개와 서울지방국세청(소소소국)에서 2011년도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173개 법인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업무를 점검한 결과, 소소소주식회사 등 5개 법인의 부적정한 R&D 조세감면 신청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 법인과 대학 간 위탁교육계약 없는 임직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한 사례

서울지방국세청(♡♡♡국)에서는 2010. 11. 16.부터 2011. 4. 8.까지 소소소주식회사(대표이사 소소소 등)의 2005~2009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 1,078억여 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6]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대학에 위탁교육훈련비로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 책임 하에 국내외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법인과 대학 간 위탁계약 없이 당해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위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소소주식회사는 2007사업연도에 위탁교육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외 대학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학 석사과정 등 교육훈련을 시행하면서 지급한 교육비 22억여 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세액공제로 8억 9천여만 원을 과다하게 신청하였다.

### ● 세제 부적격한 연구기관에 연구 위탁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한 사례

서울지방국세청(소소소국)에서는 2011. 9. 26.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2007~2008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등 109억여 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6]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 부서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담부서에 위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는 2008사업연도에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연구개발용역(♣♣♣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용역비를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공장은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세액공제로 1억여 원을 과다하게 신청하였다.

###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한 사례

서울지방국세청(♠♠♠국)에서는 2012년 3월 ☆☆☆주식회사(대표이사 ☆☆☆)의 2009~2010사업연도에 대해 서면조사 방식으로 감면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법인세 3억여 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6]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별표 9] “☆☆☆주식회사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 비용 지급 명세”와 같이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면서 지급한 약 13억 원을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위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위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였다.

### ● 연구용 재료의 매입가격을 부풀려 세액공제 과다 신청한 사례

서울지방국세청(♠♠♠♠국)에서는 2012년 8월 ∇∇∇주식회사(대표이사 ∇∇∇)의 2009~2010사업연도에 대해 서면조사 방식으로 감면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법인세 5백만여 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6] 제1호 가목 2)의 규정에 따르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건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회사로부터 연구용 재료를 3천 8백여만 원에 매입하고서도 3억 8천 8백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3억 5천여만 원만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과다 신청하였다.

### 3.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적정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전담부서”라 한다)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 연구개발비”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이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서는 2016. 3. 31. ■■주식회사(대표이사 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H, 경기도 고양시)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지출한 위탁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182,285,226원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한 것을 그대로 두는 등 [별표] “연구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법인 명세”와 같이 영등포세무서 등 27개 세무서는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주식회사 등 37개 법인이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주식회사 ▲▲ 등 39개 업체에 지출한 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한 것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계 1,299,808,83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 징수되었다.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업체에 지출한 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주식회사 등 37개 법인에 대하여 부족 징수된 법인세를 징수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료 출처 : 「감사원, 기업R&D투자 조세감면 실태」(2013),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2018)

##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이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성장·원천기술 :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으로 정하는 기술

### 2) 특징

-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보다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함 (조특령 제9조 제12항)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p.40)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계산함
-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개발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조특령 제9조 제1항)
-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회를 운영(조특령 제9조 제15항)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 심의는 의무사항이 아님

### 3) 세액공제 비율 (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

$$\text{코스닥상장중견기업} = \text{당해연도 발생액} \times [25\% + \text{최대 } 15\% \{ (\text{신성장} \cdot \text{원천기술연구개발비} / \text{매출액}) \times 3 \}]$$

$$\text{중견} \cdot \text{대기업} = \text{당해연도 발생액} \times [20\% + \text{최대 } 10\% \{ (\text{신성장} \cdot \text{원천기술연구개발비} / \text{매출액}) \times 3 \}]$$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을 의미

#### 4) 세액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조특령 제9조 제3항, 조특령 [별표7])

##### ● 자체 연구개발로 처리 가능한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조특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②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함)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처리 가능한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의 계산 방법(조특칙 제7조 제16항)

**1.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처리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처리

**2.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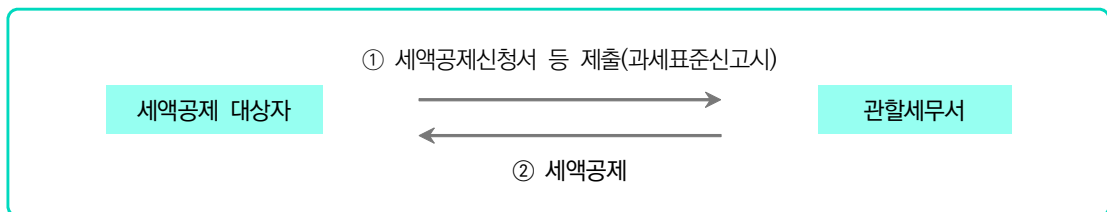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외)의 경우 공통비용(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외)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인건비가 총 연구개발 인건비(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연구의 인건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비용

5)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

-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260개 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참고(p.117))

6) 신고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 제9조 제14항)
-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작성하고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함(조특령 제9조 제13항, 조특칙 제7조 제17항)



※ 신청서 양식은 p.147~p.149, p.160, p.166~p.170 참조

## 7) 기타 주의사항

- 세액공제 대상 중 인건비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한정함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 추계과세시 세액공제배제(조특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최저한세 일부배제(조특법 제132조)
  - 중소기업 :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비과세

## 8) R&amp;D 세액공제 배제시점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조특령 제9조 제18항, 제19항)

배제사유	배제시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4호, 제7호)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인정취소일

###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으로 정하는 기술

#### 2) 특징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함(조특령 제9조 제12항)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공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호」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계산함
-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개발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조특령 제9조 제1항)
-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조특령 제9조 제15항)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의무사항이 아님

## 3) 세액공제 비율 (조특법 제10조)

$$\text{중소기업} = \text{당해연도 발생액} \times [40\% + \text{최대 } 10\% \{(\text{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text{매출액}) \times 3\}]$$

$$\text{중견·대기업} = \text{당해연도 발생액} \times [30\% + \text{최대 } 10\% \{(\text{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text{매출액}) \times 3\}]$$

## 4) 세액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조특령 제9조 제7항, 조특령 [별표7의2])

## ● 자체 연구개발로 처리 가능한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조특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 ㉡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함)
    -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처리 가능한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의 계산 방법(조특칙 제7호 16항)

**1.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처리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처리

**2.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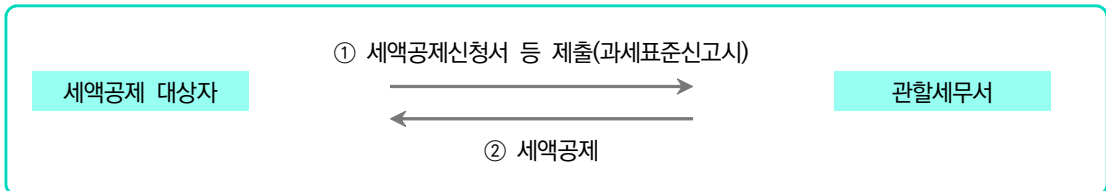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외)의 경우 공통비용(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외)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인건비가 총 연구개발 인건비(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연구 인건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비용

5)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참고(p.143))

6) 신고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 제9조 제14항)
-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작성하고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함(조특령 제9조 제13항, 조특칙 제7조 제17항)



※ 신청서 양식은 p.147~p.149, p.161, p.166~p.170 참조

7) 기타 주의사항

- 세액공제 대상 중 인건비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한정함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 추계과세시 세액공제배제(조특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최저한세 일부배제(조특법 제132조)
  - 중소기업 :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비과세

## 8)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조특령 제9조 제18항, 제19항)

배제사유	배제시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4호, 제7호)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인정취소일

##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란?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최저한세 적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 대상출연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연금(조특령 제9조의2, 조특칙 제7조의3)

### 3) 구분경리(「법인세법」 제113조 준용, 조특령 제9조의2 제2항)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 4) 익금산입방법(조특법 제10조의2 제2항)

- 동 규정에 의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함
  -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조특령 제9조의2 제3항)
    - 감가상각자산 : 관련 세법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
    -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 산입(다

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조특령 제30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야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은 1일 10만분의 22의 비율임

## 5) 적용절차(조특령 제9조의2 제4항)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양식은 p.171 참조

## 6)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해석사례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최저한세액 계산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 2015.10.08)

###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세과-411, 2012.06.22.)

###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935, 2011.11.21.)

###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455, 2011.07.11)

###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법인세과-66, 2011.01.25)

###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

-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함(창원지법2010구합3365, 2011.01.13.)

###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들 인건비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고, 동 출연금을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141, 2009.10.15)

## 5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2)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조특법 제12조 및 조특령 제11조)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과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함)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기술: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조특칙 제8조의7)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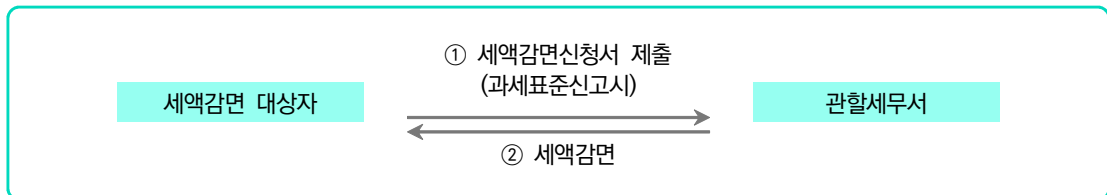
-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 3) 세액감면의 범위(조특법 제12조)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 또는 대여한 경우는 제외

## 4) 신고절차

-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 제11조 제6항)



※ 신청서 양식은 p.153~p.156 참조

## 5) 기타 주의사항

-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제2항)
  - 세무당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배제
-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세액감면 적용배제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 조특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비과세

## 6)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해석사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혹은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0-2, 2020.)

**쟁점기술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 기술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쟁점기술을 취득한 것은 쟁점기술을 매수한 것으로서 쟁점기술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술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대상 기술이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심사법인2006-74, 2007.03.21.)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2005.04.19.)

## 6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2) 대상범위

-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첨단기술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 첨단기술분야 제품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제9조의3 제1항)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 가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연구소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을 보유할 것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할 것

### 3) 감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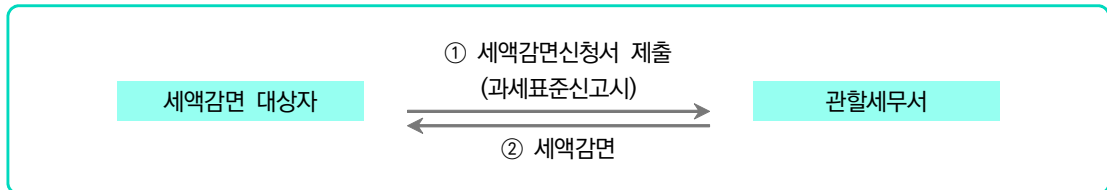
-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위에서 적용되는 감면세액 총 합계액이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경우 ①과 ②의 합계 금액을 감면한도로 함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의 50%
    - \*\*\* 사업용자산의 범위(조특칙 제8조의3)
      -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 무형자산(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탐사용권 등)
  - ②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씩을 곱한 금액(청년 상시 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4) 감면대상사업(조특령 제11조의2 제1항)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5) 감면절차

-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조특령 제11조의2 제10항)



※ 신청서 양식은 p.153~p.156 참조

## 6) 기타 주의사항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 동일 과세연도에 동 감면규정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등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제5항)
-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제2항)
  - 세무당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배제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경우 비과세
- 조특법 제1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서비스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조특법 제143조)

## 7)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해석 사례

###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법인세과-2803, 2020.08.12.)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2057, 2020.08.05.)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시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여부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1-0013, 2011.01.14.)

### 분할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하여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과-581, 2011.06.24)

### 첨단기술제품을 임대방식으로 매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적용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불구하고 상기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것임(법인세과-1339, 2009.11.30)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합병법인 기존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 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 2탐-788, 2008.04.28)

## 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기술자에 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2)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조특령 제16조 제1항, 조특칙 제9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2](p.146 참조))
  2.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3.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 ☞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범위(조특령 제16조 제2항)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 특화선도기업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의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3) 감면대상 소득요건

●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일 것

- ▶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소득세법」 제20조)

### 4) 감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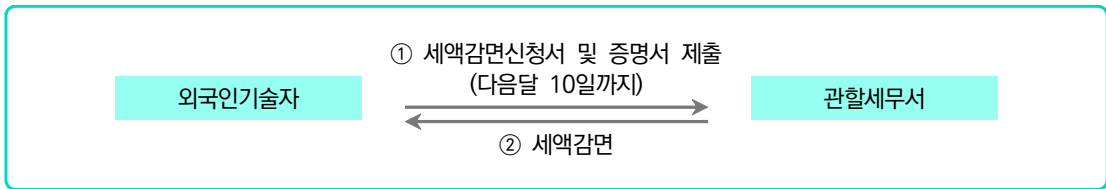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 감면

### 5) 적용방법(「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할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

### 6) 신고절차

-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주)를 거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
  - 감면신청자의 이름,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 신청서 양식은 p.172 참조

### 7) 기타 주의사항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 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석사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 - 0593, 2017.10.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외국인기술자로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병역의무이행 등을 위해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때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2중 3172, 2013.3.2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2부5132, 2013.04.1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 - 0593, 2017.10.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외국인기술자로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병역의무이행 등을 위해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때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2중 3172, 2013.3.2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2부5132, 2013.04.19.)

## 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조특령 제16조의3)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p.146) 참조)
  2.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 ▶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3.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조특칙 제10조 제2항)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 ▶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 ▶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봄

### 3) 대상 연구기관(조특령 제16조의3 제2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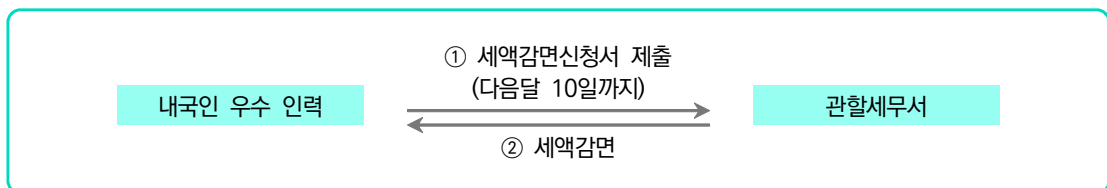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 4) 적용방법(「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할 원래 소득세의 50%를 원천징수

#### 5) 신고절차

-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를 거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조특령 제16조의3 제3항)
-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
  - 감면신청자의 이름,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 신청서 양식은 p.173참조

## 9 통합투자세액공제

### 1)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의 9개의 특정시설(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5G이동통신시설, 의약품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였으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특정시설 중심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함.

### 2) 세액공제 비율

-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①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과 추가적으로 ②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일반시설

- ① 기본공제 금액 = 당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기본공제율
- |   |            |
|---|------------|
| { | 중소기업 : 10% |
|   | 중견기업 : 3%  |
|   | 대기업 : 1%   |
- ②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 -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 3%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① 기본공제 금액 = 당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기본공제율
- |   |            |
|---|------------|
| { | 중소기업 : 12% |
|   | 중견기업 : 5%  |
|   | 대기업 : 3%   |
- ②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 -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 3%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begin{aligned}
 \text{① 기본공제 금액} &= \text{당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times \text{기본공제율} \quad \left\{ \begin{array}{l} \text{중소기업 : 16\%} \\ \text{중견기업 : 8\%} \\ \text{대 기업 : 6\%} \end{array} \right. \\
 \text{② 추가공제 금액} &= (\text{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 - \text{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times 4\%
 \end{aligned}$$

●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식(조특령 제21조 8항)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 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3)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시설의 범위(조특령 제21조, 조특칙 제12조)

구 분	공제대상 자산
일반 시설 (조특칙 제12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①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연구시험용 시설(운휴중인 것 제외) •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자산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내국인이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 포함)로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동일(운휴중인 것 제외) ② 에너지절약 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구분	공제대상 자산
<p>일반 시설 (조특칙 제12조)</p>	<p>③ 환경보전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p> <p>④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li> <li>- 종업원용 기숙사</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li> <li>-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li> <li>-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li> <li>-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li> </ul> <p>⑤ 안전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4])</p> <p>⑥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li> </ul> </li> <li>- 선박(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li> <li>-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건설업)</li> <li>- 유통산업합리화시설(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li> <li>-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li> <li>-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장 시설은 제외</li> </ul> </li> <li>-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li> <li>•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li> <li>•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li> </ul> </li> </ul> <p>⑦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자산(조특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li> <li>-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li> <li>-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li> </ul>

구 분	공제대상 자산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조특칙 제12조의2)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조특칙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2021년 7월 1일 이후 새로 투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조특령 제21조 제1항, 제29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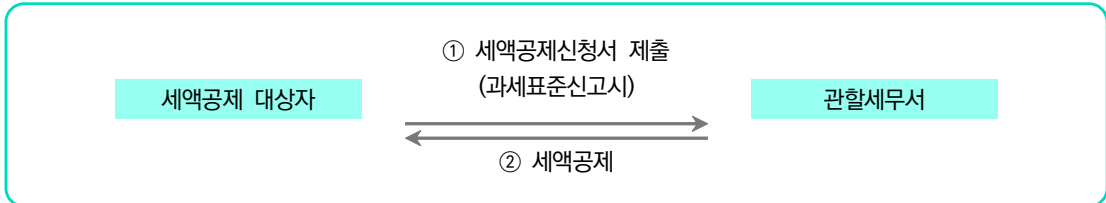
-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4) 세액공제 시기(조특법 제24조 제2항)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를 적용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법 부칙(2020.12.29.) 제4조제2항)
    1.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5) 신고절차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 제21조 제13항)



※ 신청서 양식은 p.174~p.175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조특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기록하고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조특칙 제12조의2 제4항)
  -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 가. 고체류: 개수
    -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 6)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 (조특법 제127조 제1항)
-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여타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27조 제2항)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받는 내국인의 경우 본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조특법 제127조 제3항)
-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타의 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27조 제4항)

#### 7)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조특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8)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조특법 제146조 및 조특령 제137조)

-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건물과 구축물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임대하는 경우 포함)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세액추징
  - ▶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외
  -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 ▶ 추징액 = 기간(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의 비율

#### 9) 기타 주의사항

- 다음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기본통칙 5-0...3)
  -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단, 통칙60-56...6 [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
-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기본통칙 5-0...4)
  - 단, 조특법 제24조(구조항: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용

-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함(기본통칙 5-0...2)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 10)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구)「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석사례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전기로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2021.12.29.)

###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자산을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1-법규소득-1898, 2022.02.23.)

###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후 거래처의 구매거절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설비를 연구소 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2018.07.19.)

### 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2016.03.31.)

###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함)에 투자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2015.12.17)

###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내국법인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의 제작을 위해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한 프로토 금형의 설비투자 해당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법인세과-797, 2011.10.26.)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팀-1039, 2007.05.29)

**신제품개발을 위해 금형을 구입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신제품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696, 2004.04.02)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로서 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함(서이46012-10172, 2003.01.24)

# Chapter 3

## 지방세, 소득세, 관세법 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2.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3.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4.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관세법 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2) 지방세 감면대상 및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건축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경감함
  -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직접사용에 한함)
  -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취득세 : 60% 감면 / 재산세 : 50%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 씩 추가 감면)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

취득세 : 50% 감면 / 재산세 : 50%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 씩 추가 감면)

## ▶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중견·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취득세 : 3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 씩 추가 감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 유예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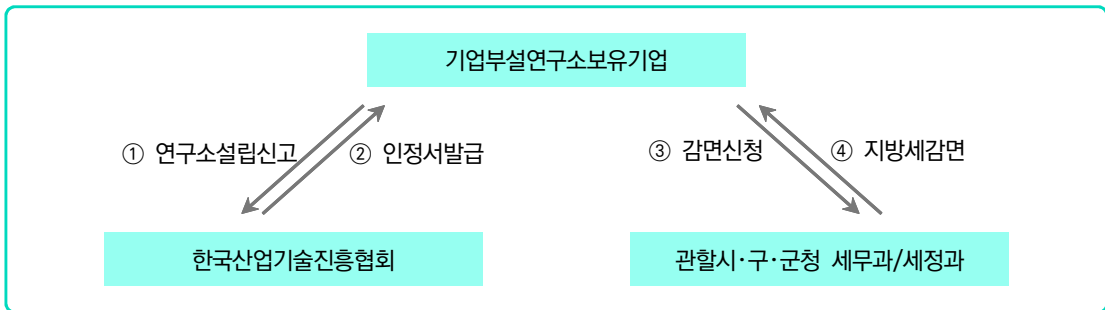
- 취득세는 1년간의 감면 유예기간이 있음(이는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사용하여야 함을 의미)
- 재산세의 경우는 감면 유예기간이 없음(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여부로 판단)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함(지방세법 제114조)

## 4) 감면절차

-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지방

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취득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제 50조제1항)



※ 신청서 양식은 p.176~p.179 참조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5항)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 개발 대상 기술이 「조특령」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함(지방세법 운용세칙 282-1)

6) 기타주의사항

-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감면자료제출 : 동 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 7)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 해석사례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원고의 신청에 따라 연구활동 중단(자진 취소)을 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연구소 (Convergence 연구소)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282조 단서의 추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 구 지방세법 제282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봄(대법원2019두32283, 2019.05.10.)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확인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서울세제-3934, 2019.03.19.)

###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종과대상인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확인

- 설계 당시부터 연구동·사무동으로 구획 설계가 되었고, 연구동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사무동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사무동 간의 출입증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동으로는 출입이 통제된다 할지라도 연구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라면 취득세 종과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됨(서울세제-8071, 2018.6.20.)

### 본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종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매출의 전부가 제품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독립된 연구소, 연구단지, 연구개발부서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종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조심 2018지0175, 2018.6.1.)

### 일부 토지를 연부취득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부차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토지는 취득하고 일부 토지는 연부취득 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칙 24조 유예기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됨(지방세특례제도과-272, 2017.08.18.)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면적 외에 그에 따른 공용면적(기계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기업이 선택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이 당해 건물의 전용면적만 인정받은 경우라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한정하여 공용면적 비율을 산정 감면함이 타당함(지방세특례제도과-4001, 2016.12.2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관련 법령해석 회신**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주식 49%를 보유한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지방세운영과-357, 2011.01.20)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등 감면분 추징 해당여부 질의회신**

- 중소기업 제외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나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없음(지방세운영과-2504, 2008.12.15)

**기업부설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지방세운영과-910, 2008.09.01)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목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련 질의 회신**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나, 기준면적 초과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것임(지방세정팀-4237, 2006.09.05)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 기존에 운영중인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점유토지 중 일부는 동 연구소에 공급하는 저수조탱크의 축조 및 수도배관 등을 매설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토지 등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기존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취득한 토지와 신규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규취득하는 토지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됨(지방세정팀-3165, 2006.07.24)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전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상 소정의 인적요건을 갖춘 시설로서 별도 독립된 연구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볼이 타당하나 다른 인력이 상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인 연구소시설로 보기 어려움(행심2006-150, 2006.04.24)

## 2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1)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2)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혁

- 중소기업·벤처기업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2004년 1월 1일)
- 일몰규정 폐지 및 실비변상적 급여범위에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추가(2007년 1월 1일 이후)
- 지원대상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추가(2012년 1월 1일 이후)

### 3)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 대상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대상직원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4)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 3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 1)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제도란?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 2) 직무발명이란?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3)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과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을 포함(「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 4) 기타사항

- 당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 5)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해석사례

**내국법인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특허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 -0363, 2020.08.05.)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

-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으며 최종적인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36, 2019.10.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과-209, 2018.01.25.)

**임원 직위자도 종업원에 포함되어 직무발명보상금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이 됨**

-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됨(심사법인 2013-0030, 2013.7.16.)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

-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소득세과-866, 2012.11.29)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받는 매분기 수입의 일정액·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 퇴직 후 재직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661, 2009.02.18)

**직무관련 발명보상금과 발명특허권기술료 발생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비과세여부**

-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되어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것임(서면1팀-1311, 2007.09.21)

## 4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1)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제도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2) 감면 대상(「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3) 감면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물품과 이를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4) 감면율

- 관세액의 80%(「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 5)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기간(「관세법」 제102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할 수 없음(단, 세관장 사전 승인물품 제외)

-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3개월
  -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3개월 이상 해당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 ☞ 사후관리 비대상
    1.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내용연수 4년 이상 물품: 2년
- 내용연수 3년 이하 물품: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6) 품목조정절차

구분	관련내용	추진일정
산업계 수요조사	차년도 하반기 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11월~12월중
품목조정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2월 중순까지
기획재정부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2월말까지
대상품목 심의·확정	기획재정부 검토 및 입법예고	-
개정고시 공고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7월 전후

## 7) 감면신청

- 수입신고 수리전(보통 수입신고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및 기타 참고사항
    -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자(관세사 등)가 전산신청하게 됨

## 8) 기타 참고사항

- 산업계 수요조사 및 품목조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



# 2022

## 연구개발 조세지원 실무 매뉴얼

# Chapter 4

## 기타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 고용중대기업 세액공제

## 4

## 기타 조세지원

##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란?

2024년 12월 31일 까지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최저한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2) 세액감면적용 대상기업 범위(조특법 제6조)

## ● 창업중소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다음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구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3) 대상업종(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조특법 제6조 제3항)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

4) 감면대상세액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감면대상세액 산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

구 분	감면대상세액 산출식
법 인	산출세액 × 당해 과세표준 중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거주자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중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5)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외(조특법 제6조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
  -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6)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4.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포함)은 제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 ※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3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75%, 그 이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조 5항)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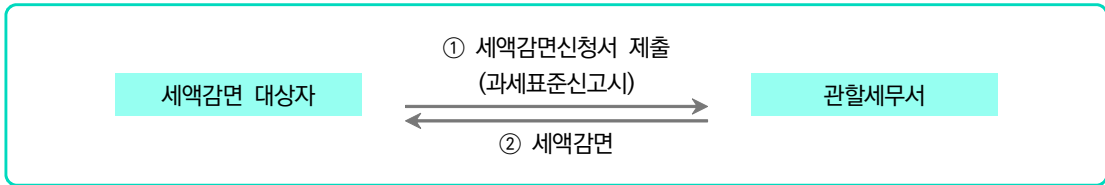
## 7) 세액감면의 승계적용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자가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소기업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을 하거나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 또는 법인전환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전환 당시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조특법 기본통칙 6-0-3)

## 8)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동일 과세연도에 동 감면규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등의 세액공제제도와 중복적용 배제. 다만, 제6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동일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동 감면규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조의 2) 등 기타 세액감면제도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5항)

### 9) 세액감면 신고절차



※ 신청서 양식은 p.153~p.156 참조

### 10)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제2항)

- 세무당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배제

### 11) 기타 주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다만, 조특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특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는 과세 연도의 경우도 최저한세 적용배제(조특법 제132조 제4항 제4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제4조 제3호)
- 구분경리 :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조특법 제143조)

### 1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해석사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2020.12.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2020.12.0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0-법인-3168, 2020.09.17.)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8-법인-3405, 2020.09.28.)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19-법인-1741, 2019.09.19.)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2019.05.24.)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9-법인-0899, 2020.07.03.)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후 동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 2019.02.15.)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2개의 제조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사업부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채무인수 및 인적·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9, 2019.01.16.)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 2018.12.10.)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재산 인수없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016-법인-6031, 2017.05.01.)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법령해석과-0433, 2015.08.18.)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소득세과-1065, 2015.07.23.)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과-409, 2014.09.25.)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법인세과-380, 2014.09.11.)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소득세과-413, 2014.07.20.)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서면법규과-731, 2014.07.11.)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소득세과-371, 2012.04.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96, 2011.03.17.)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6.30.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1026, 2009.09.18)

##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란?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2) 적용대상 사업자(조특법 제7조 제1항)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 3) 세액감면범위

- 감면기간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① 법인 : 산출세액에 당해 과세표준 중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text{감면세액} = \text{총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소득금액}}{\text{총 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

- ▶ 감면대상소득과 기타의 소득(과세대상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소득 등을 구분해서 계산하여야 함
- ▶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등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공제액이 감면대상업종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 공제액이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 ② 거주자 :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는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함)을 감면 한도로 하며, 그 밖의 경우는 한도를 1억원으로 함

### 4) 감면비율

-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

구분	소기업 사업장	중기업 사업장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업·소매업·의료업 : 10%</li> <li>• 수도권 내(도매업 등 제외) : 20%</li> <li>• 수도권 외(도매업 등 제외) :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외 도매업 등 : 5%</li> <li>• 수도권 내(지식기반산업) : 10%</li> <li>• 수도권 외(도매업 등 제외) : 15%</li> </ul>

- ▶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경기도 전지역을 말하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 ▶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 수도권 소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범위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감면비율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기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경우 10%,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경우 15%,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경우 7.5%로 한다.

## 5) 구분경리

- 중소기업 등(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과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조특법 제14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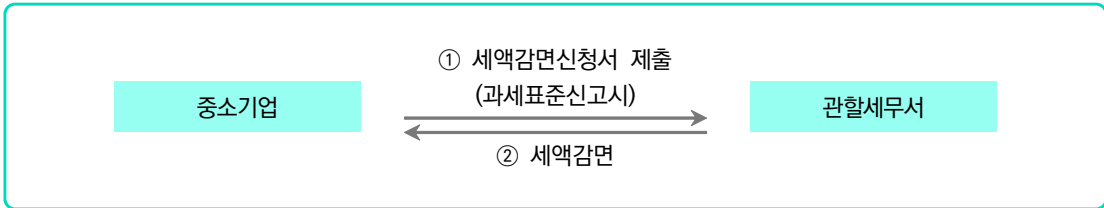
## 6)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 동일 과세연도에 동 감면규정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통합투자세액 공제(조특법 제24조) 등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제5항)

## 7)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제2항)

- 세무당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배제

## 8) 감면절차



※ 신청서 양식은 p.153~p.156 참조

## 9) 기타 주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 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석사례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2019.12.3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 외국법인의 한국지점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18-법인-0663, 2019.12.1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소기업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임(심사법인2015-0052, 2013.03.22.)

###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소득세과-0954, 2011.11.17)

**사업용계좌 신고가 지연되었다고 다른 사업장의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함**

-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외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조심2011서1834, 2011.06.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소득세과-57, 2011.01.1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함(법인세과-673, 2010.07.14)

**특정감면대상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결손금이 발생한 감면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감면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감면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09구3246, 2010.04.01)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3033, 2008.10.23.)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본점 소재지 판단**

-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206, 2007.01.29)

### 3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1)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2) 세액공제 대상범위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
  -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세액공제액

- 다음 금액의 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내용
<b>중소기업</b>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1,100만원 (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700만원 (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는 770만원)
<b>중견기업</b>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8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450만원
<b>대기업</b>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400만원

※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공한 금액으로 함

▶ 근로자 수 계산식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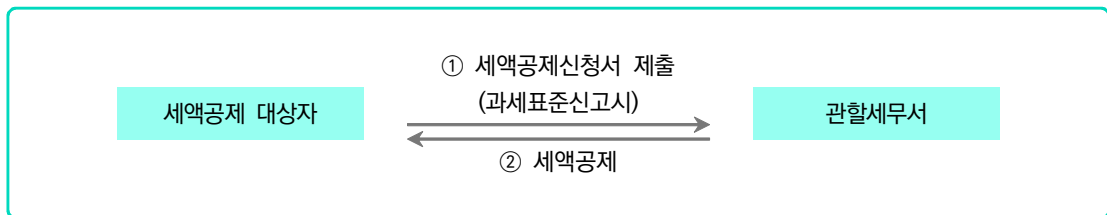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구분	내용
상시근로자	<p>「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li> <li>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li> <li>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li> <li>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li> <li>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li> <li>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li> <li>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li> </ul> </li> </ol>
청년등 상시근로자	<p>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li> <li>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li> <li>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li> </ul> </li> <li>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li> <li>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li> </ol>

#### 4) 기타 주의사항

-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계산법은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참조)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5) 감면절차



※ 신청서 양식은 p.147~p.149 참조

#### 6)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해석사례

#####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2021.12.07.)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서면-2020-법인-6004, 2021.03.15.)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2020.12.14.)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2020.11.2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19-법인-3754, 2020.07.10.)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내국법인 설립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 2019.06.13.)



# 2022

## 연구개발 조세지원 실무 매뉴얼

# Chapter 5

## 부록

1. 조세의 개념 및 분류
2. 연구개발 조세지원 관련 기본용어
3.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학문분야
5. 연구개발 조세지원 주요서식

## 부록1

## 조세의 개념 및 분류

##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함

## 1) 조세목적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
  - ▶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 위법행위제재 목적의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

## 2) 조세법률주의

-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
  - ▶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과세요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
-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세를 부과
  - ▶ 조세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법상 채권·채무와 성격이 다름

## 3)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음

-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됨.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세수입의 일부를 국방·치안·기타 사회복지 등에 사용하지만, 이것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하여 보상을 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음
  - ▶ 이러한 점에서 조세는 특정구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사용료와는 그 성격이 다름

## 4) 금전급부

- 조세는 금전급부임. 즉,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현행 세법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에 물납제도가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납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

## 2 조세의 분류

### 1) 과세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

- 국세 : 국가(중앙정부를 말함)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함.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세라 함은 내국세만을 의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함.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또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짐

### 2) 사용용도의 특정성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조세의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 ▶ 대부분의 조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는 보통세에 해당함
- 목적세 : 조세의 사용용도를 미리 정하여 그 특정목적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 ▶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포함됨

### 3)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직접세 :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조세
  - ▶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간접세 :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이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조세
  - ▶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주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 4)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에 따른 분류

- 독립세 :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예 : 교육세, 주민세, 농특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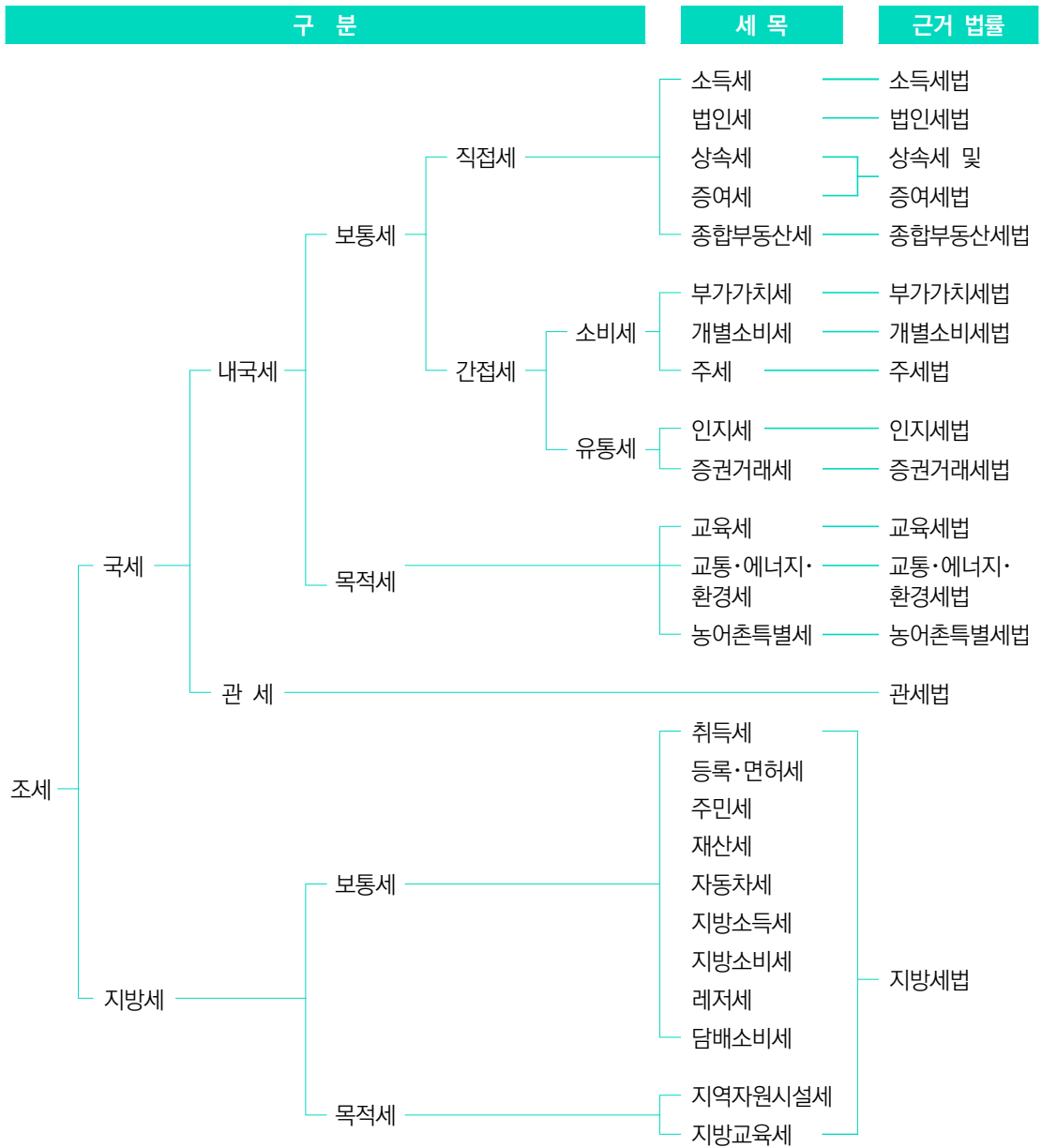
### 5) 과세표준 성격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 종량세 : 과세표준을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단위당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 6)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

- 인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
- 물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 관계없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7)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 주요변경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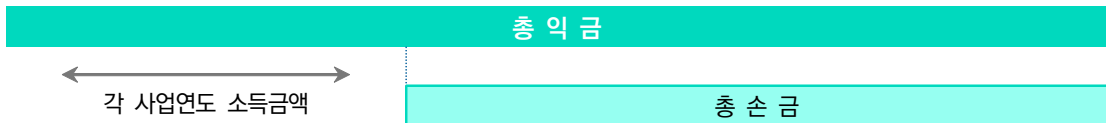
-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1998.12.28), 자산재평가세(2000.12.31), 전화세(2001.9.1), 종합토지세(2005.1.1.), 종합소득세(2005.1.1.), 부당이득세(2007.7.19)
- 신설 : 농어촌특별세(1994.7), 종합부동산세(2005.1), 지방소비세(2010.1)
- 기타 : 2001.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 특별소비세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변경(2007.12),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1.1)

## 부록2

## 연구개발 조세지원 관련 기본용어

###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익금(세법상의 수익)에서 총손금(세법상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 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을 말함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은 법인세 비과세



### 2) 결손금

- 총손금이 총익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 이월결손금 :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과는 다르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아직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 3) 익금

- 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을 말함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
    - ▶ 예 : 종업원대여금에 대한 가자금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예 : 정기예금 미수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등

#### 4) 손금

-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감소액을 말함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 예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회계상 손금에 인정되지 않은 것
    - ▶ 예 : 감가상각비 및 접대비의 한도초과 등

#### 5) 법인세 계산구조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

세액 계산 순서		
소득금액 계산단계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세표준 계산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 상 소득
	- 이 월 결 손 금	→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세 액 계산단계	과 세 표 준	→ 공제순서(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 율	→ 10%(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5%(3천억원 초과)
	산 출 세 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 「법인세법」이 정한 의무 위반시 제재목적으로 부과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준비금 등 미사용시 이자상당자산액
총 부 담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차 감 납 부 세 액	

#### 6) 비과세소득

-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하나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함
  - ▶ 예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소득 등

### 7) 소득공제

- 조세정책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 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 8) 세액감면

- 특정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1)} \times \frac{\text{감면소득}^{2)}}{\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

- 1) 산출세액은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2) 감면소득이란 과세표준에 포함된 감면소득을 말함.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등이 어떤 소득에서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

### 9) 세액공제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이 때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금액(특정 지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 예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0) 최저한세

- 최저한세란 정책적인 지원목적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측면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조특법 제132조)
- 최저한세의 적용

현행(최저한세, 법인기준)	
①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10%~17%* (단,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액에 상관없이 7%)	①,② 중 많은 금액
② 산출세액(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액)	

\* 과세표준액 100억원 이하(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12%), 1000억원 초과(17%)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8%), 이후 2년간(9%)

● 최저한세로 부인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① 일반적 신고납부의 경우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면제도 중에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법인은 각 법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감면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경제적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무의사결정이 필요함
- 최적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자금부담, 재무구조, 직접감면, 간접감면, 감면의 이연효과, 이월공제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바 통상 준비금, 특별상각, 세액공제, 감면세액 순으로 배제하는 것이 유리함

②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5항)

준비금 → 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순  
(단,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공제세액이 있을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최저한세 조정신청서 서식은 p.180~p.181 참조

●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

- ①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됨
- ② 비과세,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되지 않음



참고

수정신고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
- ②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함

### 11) 이월공제

-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이월공제 허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법조항	제도명
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조 제2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9조 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 제1항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6조의7 제8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이월공제의 적용순위

- ①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아니한 이월공제세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함
- ② 이월된 미공제 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함

## 12) 구분경리

- 구분할 사업, 자산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수입과 비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함
- 법상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세액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구분 경리토록 하고 있음
  - 구분경리라고 하여 별책의 장부를 따로따로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장부에 기장하더라도 구분기장만 하면 됨
  - 만약 장부상 구분경리가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 등이 구분 계산될 수 있으면 됨
    - ▶ 동 매뉴얼 내용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조의2)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조특법 제10조)의 경우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함

## 13) 중복지원의 배제

- 동일한 투자대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조세감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을 배제
- 중복지원 배제대상(조특법 제127조)

- ①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1항)
- ②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2항)
- ③ 세액공제 등과 외국인투자조세감면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3항)
- ④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
- ⑤ 세액감면규정 간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5항)
- ⑥ 창업중소기업 등의 지방세감면규정간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6항)
- ⑦ 양도소득세간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7항)
- ⑧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8항)
- ⑨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간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9항)

- ▶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세액 등의 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함

구 분	중복적용 배제대상 규정(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임)	
①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함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제8조의3 제3항)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②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다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제8조의3 제3항)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택 1)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제19조 제1항)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택 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	(택 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택 1)
③ 세액공제 등과 외국인투자조세감면 중복적용배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121조의2) 또는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제8조의3 제3항)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4)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5)	
④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과의 중복적용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간 중복적용을 배제함 <b>세액감면제도</b>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조의2) • 중소기업간 통합시 잔존기간 세액감면허용(제31조 제4항, 제5항) • 법인전환시 미공제세액승계 등(제32조 제4항)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감면(제62조 제4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63조 제1항) •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제63조의2 제1항)	

구 분	중복적용 배제대상 규정(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임)
<p>④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과의 중복적용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li> <li>•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제66조)</li> <li>•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제67조)</li> <li>•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제68조)</li> <li>•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85조의6 제1항, 제2항)</li> <li>•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 제2항)</li> <li>•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 제1항)</li> <l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4 제1항)</li> <li>•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1조의8)</li> <li>•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제121조의9 제2항)</li> <li>•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17 제2항)</li> <li>•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20 제2항)</li> <li>•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21 제2항)</li> <li>•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22 제2항)</li> </ul> <p><b>세액공제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li> <li>•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li> <li>•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li> <li>•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li> <l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li> <li>•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제7조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 제외)</li> <li>•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4)</li> <li>•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5)</li> <li>•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2)</li> <li>•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제104조의25)</li> <li>•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2조의4 제1항)</li> <li>•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6조의7 제8항)</li> <li>☞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를 동시 적용하지 않음</li> </ul>
<p>⑤ 세액감면규정간 중복적용배제</p>	<p>동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규정 중 2개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함</p> <p><b>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2)</li> <li>•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4)</li> </ul> <p><b>세액감면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④번의 세액감면제도(단,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외)</li> </ul>

구 분	중복적용 배제대상 규정(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임)
⑥ 창업중소기업 등의 지방세감면규정간 중복적용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규정 중 2가지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121조의2) • 외국인증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121조의4)
⑦ 양도소득세간 중복적용배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단,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⑧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음의 2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7)
⑨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간 중복적용 배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다음의 2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제98조의2)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3)

#### 14)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조특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건물과 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합병 등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법정요건의 준수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함
  - ▶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5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외
  -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이자상당가산액 : 1일 10만분의 22의 비율(연 8.03%)

- ▶ 추징액 = 기간(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이자가산비율

구 분	감면세액추징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래의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li> <li>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 제3항)</li> <li>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li> <li>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li> <li>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을 부칙 제12조 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li> </ul>

### 15) 중소기업의 개념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는 매출액 또는 자산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조특령 제2조)

구 분	요 건
①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③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상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일 것
④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① 업종기준

- 제1조건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함(조특령 제2조)
-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㉔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졸업기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2요건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조특령 제2조 제1항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자산총액 : 5,000억원 미만일 것

③ 규모기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3요건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이내이어야 함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함

#### - 매출액의 범위

- ▶ 규모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고 창업·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는 금액으로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상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조특령 제2조 제2항)

#### ④ 독립성기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4요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조특령 제2조)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
-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법인46012-44, 2000.01.07.)



**참고**

간접소유 비율계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 주주법인별로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위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 부록3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2. 15.>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탐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 설계 기술과 차량 내·외 통신 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정합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차선·차로를 제어하는 주행경로 생성 기술과 고장예지·고장제어·비상운행 등의 다중안전설계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구동·조향·제동·제어 시스템과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탑승자의 안면인식 등을 통한 신체적·감정적 변화 감지 기술과 탑승자의 모션·음성·터치 등을 통해 운전·내부 조작 등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휠(wheel)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2)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유·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3)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4)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2.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통신·검색·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분석·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 (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 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2. 지능정보	다. 클라우드 (Cloud)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 등)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mu$ m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음극 소재 설계·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형상(forming)의 설계·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cm <sup>2</sup> /cm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술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2. 지능정보	바. IT 융합	<p>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 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평가하여 유지·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구축 기술</p> <p>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불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진단·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p>
	사. 블록체인	<p>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p>
	아. 양자컴퓨터	<p>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p>
3.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p>1)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기존 서비스 및 제품에 지능화·자동화 등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신뢰성·고속성·실시간성·저전력 등을 통해 10% 이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p>
		<p>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어 소프트웨어 기술: 중앙연산장치(CPU)에 보조연산장치·연산가속장치 등의 여러 컴퓨팅 장치를 결합하여 고효율·고성능(전력소모량 등 비용 효율성을 10배 이상 개선하거나, 연산속도를 10배 이상 개선한 것을 말한다)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p>
		<p>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대규모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10,000개 이상의 노드(센서, 컴퓨터 등) 지원을 대규모로 분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100개 이상의 병렬성에서 99.999%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고신뢰 병렬 소프트웨어 기술</p>
		<p>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메모리와 다른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여 컴퓨터·서버·휴대단말기 등의 컴퓨팅 속도를 20% 이상 개선하거나 메모리 용량을 4배 이상 증대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p>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3.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인적 자원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분석 또는 대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대응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영상 기반 안전·감시·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사람·사물)나 이상상황(범죄·사고 등)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보안기술: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융합서비스·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사이버 공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저전력·경량화되면서도 외부 공격(탈취, 파괴, 위·변조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변경되는 것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후각·청각·미각·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4)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해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엔진·게임저작도구·게임 UI(User Interface)·게임 운영환경 등의 개발 또는 기능 개선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시·청각화 관련 기술,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시나리오 구현 기술, 학습·의료 등 분야의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 게임 콘텐츠 응용 기술
2)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방송 콘텐츠의 기획·제작을 위한 사전 시각화(pre-visualization) 및 그래픽 품질 개선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4. 콘텐츠	나. 문화콘텐츠	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제작을 위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처리 관리 기술, AI 머신러닝을 통한 애니메이션·에셋 자동생산 기술, 게임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제작기술,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
		4)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웹툰 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개발 기술,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r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2) 초소형·초저전력 IoT·웨어러블 SoC 설계·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제조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장비 설계·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설계·제조·패키지 기술: 물리적·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mu$ m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제조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제조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 · 센서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 · 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 · 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의 설계 · 제조 기술
		8)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 제조기술: 12nm 이하급 D램과 22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 설계 · 제조 기술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Bipolar /Complementary/ Double-diffused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 · 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 · 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 · 초절전 전력반도체 0.13 $\mu$ m 이하 BCDMOS 설계 · 제조 기술
		10)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기존 유도방식 무선충전 대비 충전 자유도가 높은 고출력 공진방식 무선 · 급속 충전 기술 및 원거리 RF(Radio Frequency) 전력전송 기술
		11)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 · 부품		1)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 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 <sub>2</sub> )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퀴츠, 스테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에피텍셀 반도체용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 · 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 · 장비부품의 설계 · 제조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	<p>7)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 (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p> <p>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 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p> <p>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p> <p>10)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cm<sup>2</sup>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μm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p>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성능 디스플레이	<p>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저 온폴리실리콘(LTPS, Low Temperature Poly Silicon) 또는 산화물 (Oxide) TFT(Thin Film Transistor, 전자이동도 8cm<sup>2</sup>/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 공정 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p> <p>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p> <p>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p> <p>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 (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p> <p>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 (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μm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p>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7) 친환경 QD(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 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듈,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6G 이동통신 기술: 초저지연( $\mu$ sec급)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Tera bps 급) 통신 지원을 위해 Tera-Hz 대역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소재 RF·안테나 및 모듈 및 부품·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 [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 [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 바이오·헬스	가. 바이오·화합물의약	<p>1)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호르몬·펩타이드·핵산·핵산유도체 등의 원료 및 재료를 확보하여 작용기전을 증명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술</p> <p>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p> <p>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배양단계 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p> <p>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해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p> <p>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p> <p>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p> <p>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p>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7. 바이오·헬스	가. 바이오· 화합물·의약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에 한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9) 바이오 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제조 기술
		10)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부품 설계·제조 기술
7. 바이오·헬스	나. 의료기기 ·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 등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7)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7. 바이오·헬스	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1)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 [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 사용하거나, 가압·진공·과열증기(SHS, Superheated steam) 및 증기직접주입법(DSI, Direct steam injection) 등을 이용한 고온·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 물질의 탐색·분석·동정(identification)과 식품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기능성 평가 및 원료 가공 또는 대량생산 기술
		3)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분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한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약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6)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식품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정제하는 기술,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분화하는 기술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 등 유효성분을 추출·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의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8. 에너지·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멤브레인(Membrane)· 전해질· 저가 분리판· 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 셀(Cell)· 모듈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 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4)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5)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6)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차량용 이차전지 팩의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나. 발전 시스템	나. 발전 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부품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 기술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압축기·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3)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610℃ 이상 및 270 bar 이상의 고온·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3,600 RPM 이상으로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부품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다. 원자력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 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을 개발하는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8. 에너지·환경	다. 원자력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 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 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 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 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 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 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해체 공정설계, 사용 후 핵연료 반출 및 안전관리, 계통제염, 원자로 및 건물·설비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및 부지복원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 고장대응 안전 계통·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라. 오염방지·자원순환	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기술,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기술, 0.3 $\mu$ m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기술 및 공정 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기술
		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 운송·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부품의 설계·제작·시험·평가 기술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circ}$ C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8. 에너지·환경	라. 오염방지·자원순환	<p>4)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 폐플라스틱의 선별·세척, 파쇄·용융·배합 등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p> <p>5)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p> <p>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기술</p> <p>7)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기술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p> <p>8) 폐수 재이용 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업용수 수질로 재생산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수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p>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p>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p> <p>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 (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이상)·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 랑폴리에틸렌(UHMWPE)·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고탄성·고강도·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p> <p>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p> <p>4)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p> <p>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p>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6)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 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가공 기술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로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 <sup>2</sup>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 <sup>3</sup> /Kgf·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 설계·제조 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고성능·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 기술
	마.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게목강관·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 제조 및 소성가공 기술
바.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	

구분	분야	신성장 원천기술
9. 융복합소재	바.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p>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기술</p> <hr/> <p>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mm<sup>3</sup>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 기술</p> <hr/> <p>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코계 접착·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접착·접착 소재 제조 기술</p> <hr/> <p>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m<sup>2</sup>·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기술</p>
	사. 희소금속·소재	<p>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sub>4</sub>),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타이타늄(TiO<sub>2</sub>) 등의 소재 개발·제조 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p> <hr/> <p>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 제조 기술</p> <hr/> <p>3)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 결정립도 5μm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술</p> <hr/> <p>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기술</p>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p>1)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10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플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p> <hr/> <p>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정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의 설계·제조 기술</p>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3)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기술: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Flat panel display)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 설계·제조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생산과정 내 용접 공정의 자동화 및 용접 품질관리를 위한 6축 이상의 용접용 수직다관절로봇, 용접전원장치, 용접용센서 설계·제조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처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지시용 매니플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0. 로봇	라. 로봇공동	<p>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추에이터(Actuator) 기술</p> <p>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p>
11. 항공·우주	가. 무인인동체	<p>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 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p> <p>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p> <p>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자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p> <p>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p> <p>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p> <p>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p> <p>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을 100%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제조 기술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h 대비 10% 이상 개선)·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의 설계·제조 기술</p>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1. 항공·우주	가. 무인이동체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 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 탑재체(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을 말한다)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체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를 말한다),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중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4) 위성통신 송수신 안테나 개발 기술: 통신목적 인공위성과의 안정적인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안테나가 탑재된 대상(항공기 등)이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자이로센서(Gyro sensor)·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거나, 안테나가 지향하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중·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궤도 데이터·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는 기능을 가진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작하는 기술
12. 첨단 소재·부품·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 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제조기술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제조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2. 첨단 소재·부품·장비	나. 첨단 부품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밸브 부품 설계·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 $\mu$ 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circ}$ C 내외) 또는 고온(300 $^{\circ}$ C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 $\times$ 10 $^{-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mu$ m)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콘덴서의 소재·부품 제조기술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설계·제조기술 : 각종 펌프(Pump), 압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선박용 모터의 소재·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부품을 설계·제작·시험·평가하는 기술
		다. 첨단 장비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 $^{\circ}$ C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 $^{\circ}$ C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슷돌을 이용하여 평면·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2. 첨단 소재·부품·장비	다. 첨단 장비	4) 첨단 터닝센터 설계·제조기술: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 $\mu$ m 이내, 최대 스피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제조 기술(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률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pm$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제조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8) 방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제조기술
13. 탄소중립	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액화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 관리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3. 탄소중립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 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화학물·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기술
	나. 수소	1)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부품·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탄소포집 청정수소 및 부생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및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3)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LNG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설계기술,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팽창기 등) 설계 및 제작기술
		5)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 흡착체에 저장하는 기술
		6)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부품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 기술
		7)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8)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연료전지시스템 출력밀도 0.32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 전기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다. 신재생 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에서 중저온(65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연료극 지지형셀, 셀·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기술
		2)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하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3. 탄소중립	다. 신재생 에너지	연가스(LNG)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여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개발·제조기술
		4)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 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고효율 셀 및 고효율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축(shaft)·베어링(bearing)·이음쇠(coupling)·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 설계 및 제조 기술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9)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깊이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등을 생산하는 기술
		11)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가스화 기술
		12)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유기냉매·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라. 산업공정	1) 수소환원제철 기술: 철광석(산화철)에 기존 탄소계 원료(유연탄, 코크스 등) 대신 수소가스를 직접 투입하여 환원함으로써 철을 만드는 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3. 탄소중립	라. 산업공정	2)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 전로 공정에서 스크랩의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상취전로 및 노내 2차 연소기술(복합취련전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탄산칼슘(CaCO <sub>3</sub> )이 없는 물질(Rankinite, Wollastonite 등)로 대체하는 공정기술과 이산화탄소에 경화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
		5)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 시멘트 산업에서 클링커 원료인 석회석을 산화칼슘(CaO)를 함유한 비탄산염 산업부산물로 대체하는 공정기술로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기술, 공정운전 최적화 기술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체기술 : 시멘트 제조과정 중 석회석 등 탄산염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소재·공정기술과 수소, 바이오매스, LNG 등 친환경 열원 및 가연성 순환자원연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 <sub>2</sub> ) 발생을 저감하는 소성 기술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 시멘트 소성공정의 열원인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연료 제조기술, 고효율 연소기술 및 연소 후 후처리 기술
		8)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시키는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 공정을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10)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GWP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설비 및 부품개발, 공정설계 및 평가기술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방법의 배출저감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3. 탄소중립	마. 에너지효율 · 수송	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개별 또는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평가 및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설계·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설계·제조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데이터센터 냉방·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 냉방·공조 시스템 및 IT 기반시설 장치를 제어하여 전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기술
		6)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 설계·제조기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수소가스(LH2)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ther) 등의 부품을 설계·제조·시험·평가 기술
		7)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과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8)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을 설계·제작·시험·평가하는 기술
		9) 친환경 굴착기 설계·제조기술 :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 생산 기술
		10)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기술

비고

위 표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유효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22. 2. 15.>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분야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다.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AP(Application Processor),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r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라.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휴대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설계·제조 기술
	마.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물리적·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mu$ m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설계·제조 및 패키징 기술
	바.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제조 기술
	사.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MOSFET, IGBT) 및 모듈의 설계·제조 기술
	아.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설계·제조기술(0.18 $\mu$ m이하):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초절전 전력반도체(0.18 $\mu$ m이하 BCDMOS) 설계·제조 기술
	자. 차세대 디지털기기에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제조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에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퀀텀닷, 롤러블, 폴더

분야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	블, 마이크로LED, Mini LED,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차.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카.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타.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5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셀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파.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급 이하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설계·제조기술
	하.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거.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너.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더.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퀴츠, 스테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러.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 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머. 고순도 석영(퀴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버.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cm <sup>2</sup>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μm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2. 이차전지
나.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종량당 에너지밀도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총방전 1,000회 이상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다.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의 잔존용량, 출력특성 등의 성능 평가 기술 및 안전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
2. 이차전지	라.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마.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제조기술, 수명 증가를 위한 안정성 향상 기술, 리튬계 원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기술 및 관련 장비 제조기술
	사.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총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의 고온특성 향상을 위한 안정성 향상기술,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기술 및 이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 제조기술
	아.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제조기술과 안정성 향상기술 및 관련 원료·장비 제조기술
	자.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 및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제조·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3. 백신	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
	나. 비임상 시험 기술 :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다.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마.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바.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사.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술

**부록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3. 16.>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

구 분	학문분야	세부분야
1. 자연 과학단	가. 수학	대수학 · 이산수학 · 정보수학, 위상수학 · 기하학, 응용수학, 응용통계, 해석학, 확률 · 이론통계
	나. 물리학	광학 · 원자물리 · 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 · 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 · 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 · 초전도체), 입자 · 장물리 · 천체물리, 통계물리 · 복합물리, 핵물리 · 플라즈마
	다.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 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나노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 · 광화학 · 융합화학
	라. 지구과학	지구 · 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 · 극지과학, 천문 · 우주과학
2. 생명 과학단	가.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 및 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감염생물학, 노화 · 암생물학, 면역학
	나.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 · 생태 · 환경생물학
	다. 기반생명	생물공학,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3. 공학단	가.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기계가공
	나. 건설 · 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재료, 건축설비환경, 건축구조, 토목구조 · 시공 · 재료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 · 측량
	다. 재료	금속재료, 반도체 · 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 · 융복합 소재
	라.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4. 정보통신 기술(ICT) · 융합연구단	가. 전기 · 전자	전력기술 · 기기, 계측 · 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나. 통신	전자기 · 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다. 컴퓨터 ·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 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상 · 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 · 정보처리
	라. 정보기술융합	정보 · 콘텐츠융합, 시스템융합, 최적화 및 데이터융합
	마. 바이오 · 의료융합	기기, 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재료, 뇌인지과학
	바. 에너지 · 환경융합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수질 및 대기질관리, 차세대에너지
5. 의학학단	가.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학
	나.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 · 내분비의학, 심혈관 · 혈액 · 신장 · 호흡기의학, 병리 · 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외상 및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생식발달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다.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 · 병태 · 재생학, 예방보건 · 재료 · 응용기초
	라.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마.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중재, 건강관리 및 예방간호중재
	바.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 부록5

## 연구개발 조세감면 주요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18.>

##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신청 내용					
⑥ 구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100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101 상생경제 자금공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10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10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104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105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L			
106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0E			
107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M			
108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A			
109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0D			
110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B			
11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112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11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114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115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N			
116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P			
11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119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제13항	13W			
120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12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122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12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124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125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12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㉓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㉖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㉗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㉘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㉙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㉚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㉛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㉝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㉞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4항	14H			
㉟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㊱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㊲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8항	10B			
㊳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㊵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㊶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㊷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5항	14O			
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㊹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㊺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㊻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㊼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㊽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㊾ 금사업자와 스크램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㊿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㉑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뒤쪽)

첨부서류	<p><b>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li> <li>-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li> </ul> <p><b>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li> <li>-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사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li> </ul>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 동 서식의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문을 의미합니다.

※ 각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 제21조제11항,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개정 2021. 3. 16.>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

###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	--------

###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①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여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여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여 [ ]부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여 [ ]부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3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총족 감면세액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0				
10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10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10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10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106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107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10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10항	17C				
10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10항	179				
110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11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92				
11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3A				
113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11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 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1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 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116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117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11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8항	117				
119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12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12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12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12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총족 감면세액
124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M				
125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1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127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128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7항	11N				
12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7항	13S				
13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13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1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F				
1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H				
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I				
13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136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8항	182				
137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8항	13Q				
138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8항	158				
139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140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141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1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14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8항	13T				
144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11항	11G				
145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11항	13U				
14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14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14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1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150 기타		164				
151 세액감면 합계		<b>1A4</b>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⑩, ⑪, ⑫, ⑬, ⑭ ~ ⑱에 대해 적용)
- ⑫는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A방식)
  - ⑬, ⑭는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⑩, ⑪, ⑬ ~ ⑱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 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⑲ 일반감면한도 (=⑬)		
	⑯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⑳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a, b])		
	⑰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a, b]) a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b 투자누계액(⑮ × 20%)		a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b 투자누계액(⑮ × 100%)		
	⑱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⑯+⑰)		㉑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⑲, ⑳])		
㉒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⑱ - ⑩) 또는 (㉑ - ⑩)					

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⑳ 합계	㉑ 개월수	㉒ 상시 근로자수 (=㉑×㉒)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 도																㉓
직전 과세연 도																㉔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㉕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㉓-㉔)			㉖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㉕)								
1억원		500만원														

⑥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㉗ 합계	㉘ 개월수	㉙ 상시 근로자수 (=㉗×㉘)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㉚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㉛ 상시근로자 수			㉜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㉛)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 방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총액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㉓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8.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9.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2.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	--------

### 3. 기술이전·대여에 관한 사항

⑤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⑥ 이전·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여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여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여 [ ]부	

###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해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번호는 이전·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 등록번호는 이전·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계정 과목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12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11)	13 직전 4년 발생액 계 (14+15+16+17)	14 (직전 1년)	15 (직전 2년)	16 (직전 3년)	17 (직전 4년)
18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13/4)		19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14+15+16)/3]		20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16+17)/2]	
21 증가발생액 (12-14)					

4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22 대상금액(=11)	23 공 제 율 25%			24 공제세액 (22×2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25 대상금액(=11)	26 유예기간 종료연도	27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28 공 제 율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29 공제세액 (25×28)
	중견기업	30 대상금액(=11)	31 공제율 8%			32 공제세액 (30×31)
	일반기업	33 대상금액(=11)	34 기본율	35 추가	36 계 (34+35)	37 공제세액 (33×36)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14(18) 경우 공제 제외)		38 대상금액(=21)	39 공제율	40 공제세액 (38×39)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41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24와 40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29와 40 중 선택) 중견기업(32와 40 중 선택) 일반기업(37과 40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재료비 등의 "㉟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제작에 한함)·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2) 항목]
- 기타의 "㉠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 인력개발비의 "㉡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 공제율의 "㉢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 ⑤, ⑥의 "구분"란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2. 3. 18.>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_\_\_\_\_ )

2 과세연도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	---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기술명	구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 계						

4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⑰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20% 또는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li> <li>■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li> <li>■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li> <li>■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li> <li>■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li> <li>■ 그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7.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2. 3. 18.>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기술명	구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계						

4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 기본율 40%	⑫ 추가	⑬ 계(⑪+⑫)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⑰ 공제세액 (⑮×⑱)
			⑯ 기본율 30%	⑰ 추가	⑱ 계(⑯+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li> <li>■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li> <li>■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li> <li>■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li> <li>■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li> <li>■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⑩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2. 3. 18.>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다~사)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뒤쪽)

## 작성 방법

※ 각 과제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1. 인건비 발생 명세

-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 "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⑥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라. 해당 과제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해당 과제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제연도 분까지는 별표 6외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제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제연도 분까지는 별표 6외3)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라. "⑦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2. 3. 18.>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 과제명	② 기술 구분 코드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④ 연구 과제명	⑤ 기술 구분코드	재료비 등		
		⑥ 총계(=⑦+⑧)	⑦ 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⑨ 연구 과제명	⑩ 기술 구분코드	⑪ 연구개발비				⑫ 금액	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 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뒤쪽)

##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 공통 사항

- 가. "①,④,⑨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②,⑤,⑩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1. 인건비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 나.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가. "⑦ 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으며,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습니다.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 나. "⑪ 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 다. "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4쪽 중 제1쪽)

##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 4. 연구과제 수행계획

## 연구개발보고서(자율양식)

-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과제명

---

### 2. 연구 개발 개요

---

###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 연구노트(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과제명

### 2. 연구 내용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연구개발계획서

##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합니다.  
\* 작성기준은 과제별·부서별·연구원별 중 선택합니다(과제별·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합니다)

##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연구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연구개발보고서

##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 연구노트

##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은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2.2.28>

##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출연금 등 수령내역			
⑥ 출연금 코드	⑦ 수령일	⑧ 수령액(익금불산입액)	
④ 익금산입조정			
⑨ (처분) 일자	익금산입액		⑫ 익금산입 후 잔액
	⑩ 누계	⑪ 당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⑥출연금 코드"란은 출연금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근 거 법 률	코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연금	20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3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출연금	4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연금	5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	60

2. "익금산입액(⑩·⑪)"란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2. 3. 18.>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20 + 25)	
-----------------------------------	--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15)

⑥ 투자 종류	⑦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여부	⑧ 총 투자 예정 금액	⑨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⑭ 누적투자 대상금액 (⑨와 ⑬ 중 큰 금액)	⑮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대상 금액	⑯ 투자 금액 (⑭-⑮)
				⑩ 해당 과세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⑪ 총 투자 예정비	⑫ 진행률 (⑩/⑪)			
계									

나. 그 외 투자금액(=17)

투자종류	⑰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20)

투자종류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 (=16+17)	⑲ 공제율	⑳ 기본공제금액 (=18×19)
일반시설		1%, 3%,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3%, 5%, 12%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6%, 8%, 16%	
	⑦이 '부'인 시설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라. 추가공제금액(=㉕)**

투자종류	㉑ 공제대상 투자금액 (=㉑)	㉒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㉓ 초과액 (=㉑-㉒)	㉔ 공제율	㉕ 추가공제금액 Min[(㉓×㉔),(㉑×2)]
일반시설				3%	
신성장 사업화시설	㉗이 '여'인 시설			3%	
	㉗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㉗이 '여'인 시설			4%	
	㉗이 '부'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중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⑥ 투자종류란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 ⑦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란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기재합니다.
- ⑫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 ⑭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⑨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⑬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⑮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⑯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⑯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⑰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㉑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⑯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㉒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㉕ 추가공제금액란의 추가공제금액은 ㉑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낱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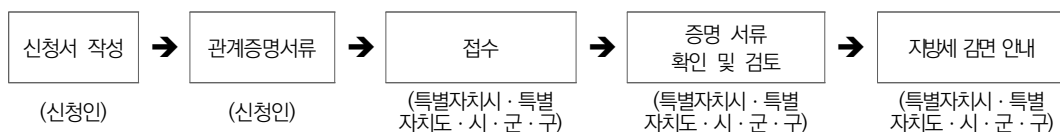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작성 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처리 절차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작성 방법

### □ 제출인

-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사업종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 업종을 적습니다.
- ⑦ 종목: 사업자등록에 따른 종목을 적습니다.

### □ 감면 물건 명세

- ⑧ 물건 종류: 부동산, 차량, 선박 등 감면대상물건의 유형을 적습니다.
- ⑨ 물건 면적(규모): 감면 대상물건의 종류 및 면적(수량)을 적습니다.
- ⑩ 물건 사용현황 또는 사용계획: 물건사용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 □ 감면 내용

- ⑪ 감면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 ⑫ 감면세목: 감면받으려는 지방세 세목을 적습니다.
- ⑬ 감면 근거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근거 조문 등을 적습니다.
- ⑭ 감면세액 산출명세: 총 산출세액에서 부과세액을 빼고 남은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업 연도	. . . ~ . . .	<b>최저한세조정계산서</b>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① 구	분	코드	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10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득	100	100			
	조정금액	103				
104	조정 후 소득금액 ( 100 + 102 - 103 )	04				
	최저한세	105				
	적용대상	106				
	특별비용	107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104 + 105 + 106 )	07				
	기부금 한도 초과액	08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107 + 108 - 109 )	10				
	이월결손금	11				
	비과세소득	12				
	최저한세 적용대상비과세소득	13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익 불산입 · 손금산입	14				
	차감소득금액 ( 110 - 111 - 112 + 113 + 114 )	15				
	소득공제	16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공제	17				
	과세표준금액 ( 115 - 116 + 117 )	18				
	선박표준이익	24				
	과세표준금액 ( 118 + 119 )	25				
	세율	19				
	산출세액	20				
	감면세액	21				
	세액공제	22				
	차감세액 ( 122 - 123 - 124 )	23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120 중 소 기업 유예 기간 월	121 유예 기간 종료 후 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㉞란부터 ㉞란까지, ㉞란 및 ㉞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㉞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의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㉞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㉞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㉞란부터 ㉞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㉞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㉞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㉞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으로 적습니다.

1. ㉞란 중 ㉞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㉞란 중 ㉞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㉞란 및 ㉞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㉞ 조정 후 소득금액란: ㉞, ㉞, ㉞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㉞란 중 ㉞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㉞ 준비금 계란 중 ㉞ 차감액을 적고, ㉞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㉞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㉞ 차감액과 ㉞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㉞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㉞란 중 ㉞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㉞ 준비금 계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㉞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㉞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㉞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㉞란과 ㉞란 중 ㉞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㉞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㉞란과 ㉞란 중 ㉞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㉞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㉞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㉞ 금액란 중 ㉞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㉞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㉞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㉞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㉞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㉞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㉞, ㉞, ㉞부터 ㉞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㉞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㉞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㉞, ㉞, ㉞부터 ㉞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㉞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㉞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㉞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㉞란 중 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㉞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㉞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㉞란 중 ㉞ 산출세액란: ㉞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㉞란 중 ㉞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㉞란 중 ㉞ 선박표준이익이 ㉞란 중 ㉞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구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1~3년차	4~5년차	과표 1백만원 이하	과표 1백만원~1천만원 이하	과표
현행	7%	8%	9%	10%	12%	
종전	7%	8%	9%	10%	12%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4. ㉞란 중 ㉞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㉞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㉞란 중 ㉞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㉞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㉞란 중 ㉞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㉞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㉞란 중 ㉞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㉞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㉞란 중 ㉞, ㉞, ㉞, ㉞, ㉞란은 각각 ㉞란 중 ㉞, ㉞, ㉞, ㉞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㉞란 중 ㉞, ㉞란은 각각 ㉞란 중 ㉞, ㉞란의 금액에서 ㉞란 중 ㉞, ㉞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㉞란 중 ㉞ 차감세액은 ㉞란 중 ㉞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㉞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 12. 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2. ㉞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㉞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연구진 김상길 본부장  
유지영 팀장  
송현주 차장  
김아람 대리  
이승현 대리  
장지원 주임  
박진형 주임

감수 및 해석사례 조용립 회계사(우리회계법인)



## 2022년 연구개발 조세지원 실무 매뉴얼

2022년 5월 16일 인쇄

2022년 5월 16일 발행

발행인 구 자 균

편집인 마 창 환

발행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37길 37 산기협회관

TEL: (02) 3460-9040

FAX: (02) 3460-9039

URL: <https://www.koita.or.kr>

인쇄처 (주)갑우문화사 02)2275-7111 / 031)943-7111

ISBN 979-11-85369-29-7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지합니다.